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 10. 23.(목)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9. 25. 오중균 의원 (의안번호 525호)
- 나. 회부일자 : 2025. 10. 14.
- 다. 상정일자 : 제3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5. 10. 17.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오중균 의원)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시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시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다.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9. 30. ~ 2025. 10. 4.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정 취지

-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 의회 보고의무를 신설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문 검토

- 개정안 내용은 본 조례 제12조에 제3항 조문을 신설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산을 취득·처분 시,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와 재산관리관이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자료 제출 등을 통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임.

〈안 제12조제3항 개정 전·후 비교〉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 ② (생략)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p>③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취득 또는 처분하는 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자료 제출 등을 통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1건당 1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처분한 경우2.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의회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다. 종합 검토 결과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할 시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¹⁾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구체적 재산의 보고·통제 절차가 미비함.
- 따라서 구청장의 집행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계획에 미포함된 일정 규모 이상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시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마련한 것은, 중요 재산거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회의 통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 조치로서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통상적인 견제·감시 권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이나 시행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9., 2022. 4. 2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달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

2025년 10. 23.(목)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9. 25. 오중균 의원 (의안번호 526호)
- 나. 회부일자 : 2025. 10. 14.
- 다. 상정일자 : 제3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5. 10. 17.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육영 의원)

가. 제안이유

- 화재로 인하여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고 신체적, 재산적인 피해 및 정신적 고통을 겪는 피해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화재피해주민에게 임시 거주시설 및 긴급생활용품을 제공하고 심리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안 제3조~제4조)
- 다. 지원 내용(안 제5조)
- 라. 지원 취소 및 환수(안 제6조)
-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9. 30. ~ 2025. 10. 4.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제정 취지

- 본 제정안은 주택 화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 및 제4항²⁾에 따르면, 국가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17. 1. 17., 2020. 8. 18., 2023. 5. 16.>

1. 사망자 · 실종자 · 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 지방세, 건강보험료 · 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 · 어업 · 임업 · 염생산업(鹽生產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1. 17., 2024. 1. 16.,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 안정과 피해 시설의 복구를 지원할 수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원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제정안은 상위법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법적 근거와 제정 타당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최근 3년간 성북구 화재발생 현황에 따르면, 총 690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 1명, 부상자 32명 등 인명 피해가 있었고, 재산 피해액은 약 14억 3천만원에 달하는 등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 지원은 제도적으로 미비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최근 3년간 성북구 화재 발생 및 피해 현황

구 분	화재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 (천원)
		계	사망	부상	
합 계	690	34	1	32	1,436,727
2022	158	14	1	13	338,543
2023	246	8	-	8	405,784
2024	286	12	1	11	692,400

* 출처 : 국가화재정보시스템(www.nfds.go.kr)

2025. 4. 1.>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나. 조문 검토

- 안 제2조(정의)에서는 '화재피해주민'의 범위를 성북구 관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중 성북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정의하였으며,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화재피해주민'의 생활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지원대상)는 고의적 화재나 경미한 피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긴급한 경우 구청장 재량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상황에 따른 유연한 행정 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화재피해주민 지원 등)는 임시주거시설 지원, 심리상담 등 지원 항목을 정하고, 피해자가 직접 또는 가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함.
- 안 제6조(지원 취소 및 환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환수하도록 규정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함.
- 안 제7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 결과

- 이상과 같이 본 제정안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시설 제공,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화재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지역 사회의 안전망 강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됨.

- 참고로 서울시를 포함하여 11개 자치구(영등포, 은평, 양천, 광진, 송파, 금천, 동대문, 성동, 관악, 중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

2025년 10. 23.(목)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0. 1.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517호)
- 나. 회부일자 : 2025. 10. 1.
- 다. 상정일자 : 제3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5. 10. 17.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임근수 행정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성북구립도서관의 종류 및 명칭을 정비하여 구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 및 독서증진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신규 개관: 보문숲길도서관('24. 12. 7. 개관),
성북어린이청소년도서관('25. 6. 14. 개관)
- 폐관: 성북이음도서관('24. 7. 1. 폐관)
- 관종 변경(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해오름도서관, 정릉도서관,
월곡꿈그림도서관

다.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8. 28. ~ 2025. 9. 17.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 개요

- 본 개정안은 「도서관법」 전부개정(2022.12.8. 공포, 유예기간 2년, 2024.12.7.까지)에 따라 새로 도입된 공공도서관 등록제를 반영하고, 구립도서관의 신규 개관 및 폐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구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도서관법」 전부개정으로 공공도서관 등록제가 시행됨에 따라, 사서 인력 및 시설 규모 등의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월곡꿈그린도서관, 정릉도서관, 해오름도서관 3개소를 공공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으로 관종을 변경한 것임.
- 또한 2024년과 2025년에 각각 개관한 보문숲길도서관과 성북어린이청소년도서관의 정보를 조례에 반영하여 구립도서관 현황을 현행화한 것이며,
- 성북이음도서관은 보문·삼선 생활권역 내 신규 도서관 2개소 개관으로 인한 서비스 중복을 해소하고, 인력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조치로서 폐관함에 따라 해당 도서관을 조례상 도서관 목록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안 별표1 개정사유〉

구분	도서관명	개정사유
신규 개관	보문숲길도서관	`24. 12. 7. 개관
	성북어린이청소년도서관	`25. 6. 14. 개관
폐관	성북이음도서관	`24. 7. 1. 폐관
관종 변경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월곡꿈그림도서관 정릉도서관 해오름도서관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른 공공도서관 등록제 시행으로, 사서와 시설 규모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해당 도서관의 관종을 변경

다. 종합 검토 결과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도서관법」³⁾ 전부개정에 따른 공공도서관 등

- 3)「도서관법」제36조(등록 등) ①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이하 "설립자"라 한다)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 또는 설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록제 시행에 맞추어 구립도서관의 관종을 정비하고, 신규 개관 및 폐관 사항을 반영하여 도서관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 「도서관법 시행령」제28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등록 요건을 말한다.
- ③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을 새로 발급해야 한다.
- ④ 법 제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 면적(도서관의 연면적 중 도서관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부분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33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보유 장서가 1천권 미만인 공공도서관을 말한다.

□ 참고자료

〈공공도서관 등록요건 서울시 기준〉

구분	사서	시설(서비스 면적)	자료
공공도서관	5명 + 면적에 따라 증가	330㎡ ~	30,000점
(공립)작은도서관	1명	33㎡ ~	1,000점

〈성북구 도서관별 등록요건 현황〉

연 번	도서관명	사서		시설		자료		총족 여부	비고
		요건	현황	요건	현황	요건	현황		
1	성북정보	10	12	330	2,255	30,000	206,924	충족	
2	아리랑	7	11	330	1,271	30,000	126,578	충족	
3	종암동새날	5	5	330	379	30,000	83,956	충족	
4	석관동미리내	5	5	330	361	30,000	71,132	충족	
5	달빛마루	6	6	330	737	30,000	96,956	충족	
6	청수	5	6	330	417	30,000	78,113	충족	
7	아리랑어린이	5	5	330	625	30,000	72,008	충족	
8	장위행복누림	5	5	330	338	30,000	52,125	충족	
9	성북길빛	6	8	330	935	30,000	73,820	충족	
10	글빛	6	6	330	799	30,000	58,569	충족	
11	보문숲길	5	5	330	370	30,000	47,623	충족	신규개관
12	성북 어린이청소년	6	7	330	828	30,000	54,388	충족	신규개관
13	월곡꿈그림	5	2	330	292	30,000	20,437	미충족	관종변경
14	정릉도서관	5	2	330	225	30,000	34,782	미충족	관종변경
15	해오름도서관	5	3	330	260	30,000	31,985	미충족	관종변경
16	오동숲속	1	2	33	431	1,000	44,121	충족	작은도서관
17	서경로꿈마루	1	1	33	125	1,000	47,350	충족	작은도서관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사 보고서

2025년 10. 23.(목)
행정기획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10. 1.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518호)
- 나. 회부일자 : 2025. 10. 14.
- 다. 상정일자 : 제31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5. 10. 17. 상정 · 의결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임근수 행정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이용자의 다양한 행정상 요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승인 및 동의)에 따라 민간 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업 :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 위탁기간 : 2025. 12. ~ 2026. 2.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 운영기간 : 2025. 12. 20.(토) ~ 2026. 2. 1.(일)(우이천다목적광장)
2025. 12. 27.(토) ~ 2026. 1. 25.(일)(길음7단지 유휴부지)
- 위탁내용
 - 눈썰매장, 얼음썰매장, 아이스링크, 체험학습장, 어린이 놀이기구, 휴게시설, 부대시설 등 시설 설치 및 조성, 폐장 후 철거
 - 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로 안전 관리, 인력 운용 등
 - 기타 눈썰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그 밖에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
- 위탁비용 : 1,070,000천원
- 수탁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 최근 5년 이내 실외 눈썰매장 또는 스케이트장을 설치 및 운영한 수탁 또는 용역 실적(단일 건 기준 2억원 이상)이 있는 사업자
- 위탁업체 선정 : 공개모집 후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의 후 선정

나.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및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경쟁력 유도를 통해 능률성을 제고하고 효율

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

- 관련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관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다. 참고사항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주요 내용

-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 초까지 운영되는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사무를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의 제안서 심사를 거쳐 2개월 정도 단기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
- 민간위탁하려는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내용과 2024년도 운영 결과는 다음과 같음.
 1. 눈 눈썰매장, 얼음썰매장, 아이스링크, 체험학습장, 어린이 놀이기구, 휴게시설, 부대시설 등 시설 설치 및 조성, 폐장 후 철거
 2. 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로 안전 관리, 인력 운용 등
 3. 기타 눈썰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

2024년도 겨울눈썰매장 운영 결과

위치 및 운영기간 :

위치	운영기간
길음7단지 앞 공터	2024. 12. 28.(토) ~ 2025. 1. 26.(일) (30일간)
석계역 옆 우이천 다목적 광장	2024. 12. 20.(금) ~ 2025. 2. 02.(일) (45일간)

- 운영시간 : 10:00~17:00,
- 입장요금 : (관내0 무료, (관외) 3천원(길음7단지)/ 5천원(우이천)
※단, 36개월 미만 영유아 무료
- 총사업비 : 1,092백만원(민간위탁금: 1,070백만원, 일반운영비 22백만원)
- 위탁체 : 에스티산업
- 입장인원 : 총 47,200명 [2023 총이용객(31,425명) 대비 15,775명 증가]

구 분	계(단위:명)	우이천			길음7단지		
		소계	성인	미성년	소계	성인	미성년
합 계	47,200	33,283	16,845	16,438	13,917	6,711	7,206
관 내	45,419	31,905	16,126	15,779	13,514	6,525	6,989
관 외	1,781	1,378	719	659	403	186	217

- 운영수입 : 총 8,099,000원

구 분	입장료(원)	관외(명)	수익(원)
길음동	3,000	403	1,209,000
우이천	5,000	1,378	6,890,000
합 계			8,099,000

나. 조문 검토

민간위탁 근거 및 타당성

-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⁴⁾에서 구청장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되지 않는 사무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제3호⁵⁾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은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 등 전문성 및 노하우가 요구되므로 민간위탁 사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특히 다중이용시설 특성상 안전확보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다고 사료됨.

선정방법의 적정성

- ‘선정방법’은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⁶⁾에 따라 공개모집 후 선

-
- 4)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수탁기관 선정)
 -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3.)

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걸쳐 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선정방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 검토 의견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이며, 구의회 동의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
- 다만 '눈썰매장' 운영 특성상 안전성 확보와 공공성 보장이 핵심이므로, 위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안전관리 기준·운영조건을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제6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